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92
----------	---------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5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서울시 관할구역과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로 확대하는 것이나, 이 중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는 운영범위의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동 개정조례안의 “경기도 전역 및 인천광역시”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 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와 관련하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생략) <u><신설></u></p> <p>② ~ ⑤ (생략)</p>	<p>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u> 2. <u>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u> 3. <u>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u> <p>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